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도6326 사자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61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및 원심이 각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증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
	대법관	고영한	_____
주심	대법관	김창석	_____